

##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18다261322 판결

[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,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적법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, 이와 같은 주주 대부분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하다고 판시하면서도,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]

### 1. 사안

피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는 발행주식 10,000주 중 7,000주(이 사건 주식)를 인수하여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였음.

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, 원고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(1차 주주변경), 그 후 신주인수대금 납입 절차 없이 주주가 추가되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짐(2차 주주변경).

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졌고, 원고가 위 각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함.

### 2. 원심의 판단: 원고 청구 인용

원심은, 원고를 피고 회사의 실질 주주로 인정한 다음,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함.

### 3. 대법원의 판단: 일부 소각하, 상고 기각

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일부 파기 재판함.

#### 가. 관련 법리

(1)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에서 **확인의 이익**은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음.

(2)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**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**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,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,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음. **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예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.**

(3)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 회사가 인수인의 청약에 상응하는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는지, **인수인의 법률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** 그 인수인을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**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.**

(4)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자의 명의개서 청구에 따라 회사는 심사를 거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함. 이때 **회사는**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(주권이 발행된 경우) 또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가(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) 등 **명의개서청구에 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**,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**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음.** 따라서 주식을 양수한 자가 그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그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.

(5) **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**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,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**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.**

## 나. 구체적 판단

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일부 결의는 그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를 찾아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, 부적법 각하함.

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이고,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기재하였는바, 1차 주주변경에 따른 주주명부 기재는 부적법함.

2차 주주변경의 기초가 된 신주발행은 신주인수에 따른 주금이 전혀 납입되지 않았으므로, 2차 주주변경에 따른 주주명부 기재도 부적법함.

결국,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 당시 피고가 발행한 주식은 설립 당시 발행한 10,000주뿐이고,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었던 자는 원고인데,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위 각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부존재함.

## 4. 대상 판결의 의의

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의의 존재나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

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,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.

## 관련구성원

### 이원

변호사

02-316-4406

wlee@shinkim.com

### 문희춘

변호사

02-316-4051

hcmoon@shinkim.com

### 김세종

변호사

02-316-4108

sejongkim@shinkim.com